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원천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지급 내용	⑧ 귀속연도	년	⑨ 지급 시기 [] 상반기(1월~6월) [] 하반기(7월~12월)
	⑩ 근로자 총 인원	명	⑪ 과세소득 (⑬번 합계 + ⑭번 합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⑯ 근무 기간	⑰ 지급월	⑱ 급여 등	⑲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1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2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3.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⑨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⑬ 급여 등의 합계 금액과 ⑭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5.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6. ⑮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7. ⑯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6.30.)
8. ⑬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⑭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9. ⑬ 급여 등란과 ⑭ 인정상여란에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경우 지급월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작성)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⑯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예: 2021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1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 2021.07.20. - 2021.07.20.)

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③ 사업자등록번호		⑧ 귀속연도	⑨ 지급시기			
			[] 상반기(1월 ~ 6월) [] 하반기(7월 ~ 12월)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⑯ 근무 기간	⑰ 지급월	⑱ 급여 등	⑲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3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4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5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6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 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㉔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사 업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①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상호 (법인명,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⑭번 합계)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당 월에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업종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액	⑮ 세율	⑯ 소득세	⑰ 지 방 소 득 세	⑱ 계 (⑯+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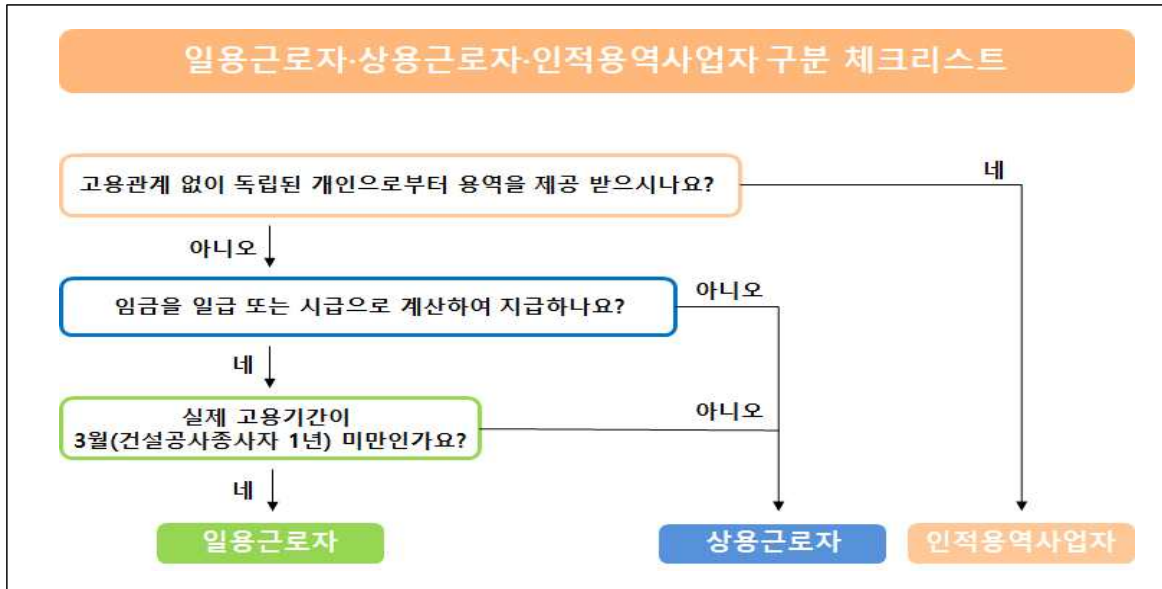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 나. ⑧ 귀속연도란 및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
 - 다. ⑩ 업종구분란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3쪽 참조)를 적습니다.
 -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병의원(851101)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바. ⑭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건별 소액부징수(⑮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사. ⑮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 아. ⑯ 소득세란은 ⑭ 지급액과 ⑮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 ⑰ 지방소득세란은 ⑯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업종코드번호

종목	업종 코드	적용범위	종목	업종 코드	적용범위
가수	940304	가수	자문·고문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등
성악가 등	940305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바둑기사	940901	바둑기사
작곡가	940301	작곡·작사가, 편곡가, 각색영화편집	꽃꽂이교사	940902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저술가/작가	940100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포함	학원강사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화가관련 예술가	940200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 지도
배우	940302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유아/아동에게 학습지가 아닌 교재/교구를 활용지도
모델	940303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방과후강사	940925	학교 정기수업 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종사
연예보조	940500	연예보조출연자,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대리운전	940913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퀵서비스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배달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심부름용역	940917	심부름센터, 말벗서비스
기타 모집수당	940911	증권매입권유, 저축권장 분양알선, 모집알선, 채권회수수당	물품운반	940919	의류(직물)운반, 이삿짐운반, 짐운반원
대출모집인	940923	대출관련 업무수행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	캐디	940914	골프장 경기자의 보조용역수행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신용카드발급 관련 업무수행	직업운동가	940904	운동지도가, 역사(심판포함), 경륜·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원, 감독 등 포함
음료배달	940907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 활동
방문판매원	940908	서적외판원, 학습지·화장품· 정수기·자동차 등 방문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가정/사무실 등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정기 점검활동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중고자동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안내
다단계판매	940910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940928	어린이(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전
간병인	940912	개인간병, 방문간호, 파출간병인서비스 등	봉사료수취자	940905	유형접객원, 댄서
목욕관리사	940915	목욕관리사	병의원	851101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행사도우미	940916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 홍보	기타자영업	940909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종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용된다.

※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 또는 착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거 주 자 의 사 업 소 득)
([]지 급 자 보 관 용 []지 급 자 제 출 용)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해당 월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업종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액	⑮ 세율	⑯ 소득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⑯+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①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상호 (법인명,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⑮번 합계)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당 월에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소득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 건수	⑮ 지급액	⑯ 필요 경비	⑰ 소득 금액	⑱ 세율	⑲ 소득 세	⑳ 지방 소득 세	㉑ 계 (⑲+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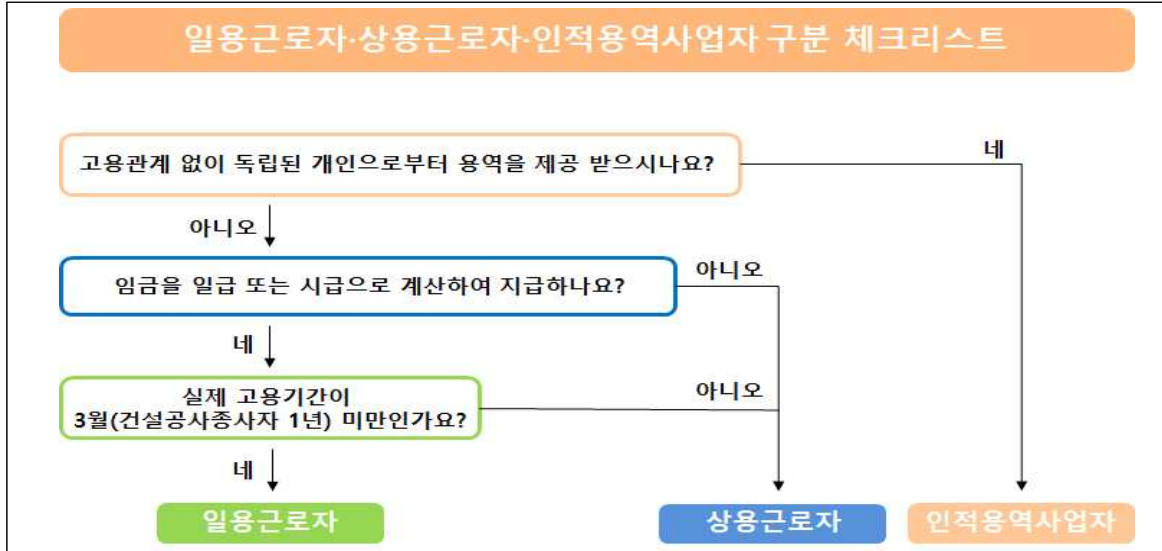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리목적의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 소득(예: 학원강사, 전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작성합니다.



2.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 나. ⑧ 귀속연도란 및 ⑨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다. ⑩ 소득구분란은 아래의 소득구분표에서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바. ⑮ 지급액란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징수(⑮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사. ⑯ 필요경비란은 ⑮ 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 아. ⑰ 소득금액란은 ⑮ 지급액에서 ⑯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자. ⑱ 세율란은 20%를 적습니다.
- 차. ⑲ 소득세란은 ⑰ 소득금액과 ⑱ 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카. ⑳ 지방소득세란은 ⑲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 1월			[] 2월			[] 3월			[] 4월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㉔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귀속 연도	⑨ 귀속 월	⑩ 소득 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 부 (외국인 "○")	⑭ 지 급 건 수	⑮ 지급액	⑯ 필요 경비	⑰ 소득 금액	⑱ 세 율	⑲ 소득 세	⑳ 지방 소득 세	㉑ 계 (⑲+⑳)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㉔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 소득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4)] 삭제 <2021. 3. 16.>